조치원 한신더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HANSHIN THEHUE

※ 본 안내문의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26-2,3,6번지 일원(조치원 교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2개동 총 256세대 중 일반공급 190세대 (조합원 59세대, 보류지 7세대 제외)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 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38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9세대 등 총 101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0월(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 당첨예정자 수, 괄호( )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주택형	59	65A	65B	계
총 세대수	101세대	45세대	44세대	
장애인	2(2)	2(2)	2(2)	6(6)
국가유공자	1(1)	1(1)	2(2)	4(4)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	1(1)	2(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1)	1(1)	2(2)
중소기업 근로자	1(1)	-	1(1)	2(2)
북한이탈주민	1(1)	-	-	1(1)
우수선수	-	1(1)	-	1(1)
입주기업종사자	1(1)	-	-	1(1)
계	7(7)	5(5)	7(7)	19(19)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 100% 선정합니다.

2 분양가 및 조건

■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10월 07일(금) 예정	* 일간신문 및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http://www.jcw-thehue.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사이버 견본주택	2022년 10월 07일(금) 예정	*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예정(사전 일반 관람 불가) * 조치원 한신더휴 홈페이지(http://www.jcw-thehue.com)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년 10월 17일(월) 예정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인터넷 신청을 권장/은행창구 접수 불가)

		*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신분증 지참 및 신청 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 자격확인 서류 지참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2년 10월 25일 (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2년 11월 07일(월) ~ 2022년 11월 10일(목) 4일간 예정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새내로 122, 1층 분양홍보관 * 시간 : 10:00~17: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정은 업무 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청약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네이버 및 은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4 기관추천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치 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5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특별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

구 분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서류는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 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 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투시도도 및 평면도

투시도	59(확장형)
	

65A(확장형)	65B(확장형)
	

8 견본주택 및 현장위치



HANSHIN
THEHUE

사업지위치 :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26-2,3,6번지 일원
견본주택 : 세종시 새내로 122, 1층 분양홍보관
홈페이지 : http://www.jcw-thehue.com
(입주자 모집공고일 오픈)
시행사 :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한신공영(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의 사전 일반관람이 불가하오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당첨자에 한해 관람(당사 홈페이지에서 안내 확인 및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